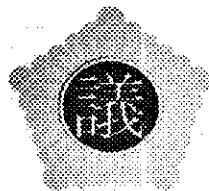


제234회 정례회
2004. 12. 20(월)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
정수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 12월 7 일

· 회부일자 : 2004년 12월 8 일

다. 상정 일자

○ 제234회 정례회

·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2004. 12. 14) 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농정국장 우 병 수)

가. 제안이유

○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인터넷 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른 예약금 및 환불에 관한 사항과 시설사용료 현실화, 입장료 징수규정 삭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충청북도자연휴양림운영조례”로 개정

○ 쓰레기 수거비용 및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에 따른 시설사용료 일부 인상 징수 (안 제4조)

- 인터넷 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라 예약후 3일이내 시설사용료 전액을 지정계좌로 입금시 예약유효 (안 제6조)
- 예약취소에 따른 예약금의 위약금 처리 (안 제7조)
- 산림법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3조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조항 신설 (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상 업)

충청북도가 조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징수규정 삭제와 인터넷 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른 예약금 및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시설사용료 현실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 종전의 '충청북도조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입장료 징수 규정을 금번에 삭제하고 시설사용료 일부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제명을'충청북도자연휴양림운영조례'로 수정하는 하는 것에 대한 검토와
- 제11조 도유재산인 조령산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는 충청북도가 재산관리의 기본방향이 크게 변경하기 이전에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데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 생 략 "

5. 토 론 요 지 : " 생 략 "

6. 심 사 결 과 : " 수정 가결 "

가. 수정이유

- 기존의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서 입장료 징수 규정만을 삭제하고 시설사용료 일부를 인상하는 내용이므로 제명은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인 것으로 제명을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을 "충청북도조령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로 수정

7. 소 수 의 견 요 지 : "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 없 음 "

9. 별 첨

-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대 한수정동의

제안연월일 : 2004년 12월 14일

제안자 : 박종갑 의원 외

□ 제안이유

- 기존의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서 입장료 징수 규정만을 삭제하고 시설사용료 일부를 인상하는 내용이므로 제명은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한 조례인 것으로 제명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을 "충청북도조령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로 수정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제명을 "충청북도자연휴양림운영조례"를
"충청북도조령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충청북도자연휴양림운영조례	충청북도조령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 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0
----------	-----

제출연월일 : 2004년 12월 7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인터넷 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른 예약금 및 환불에 관한 사항과 시설사용료 현실화, 입장료 징수규정 삭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충청북도자연휴양림운영조례”로 개정
- 쓰레기 수거비용 및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에 따른 시설사용료 일부 인상 징수 (안 제4조)
- 인터넷 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라 예약후 3일이내 시설사용료 전액을 지정계좌로 입금시 예약유효 (안 제6조)
- 예약취소에 따른 예약금의 위약금 처리 (안 제7조)
- 산림법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3조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 조항 신설 (안 제11조)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취 : 붙임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조령산자연휴양림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자연휴양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 를 말한다.
2. 청소년 :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13세이상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3. 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 : 산림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①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①시설사용료는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사용예약을 받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
2. 신용카드, 인터넷, 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

③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휴양림에 사용권 발매기를 설치한다.

제5조(시설사용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휴양림 업무와 관련된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도지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휴양림과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도지사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예약금) ①휴양림내 숙박시설을 예약한 자의 사용료는 예약후 3일 이내(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은 제외)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지정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제7조(위약금 처리) ①휴양림시설 사용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거 예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사용일(check-in) 3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환불
2. 사용일(check-in)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총사용료의 10% 해당하는 금액
3. 사용일(check-in) 1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총사용료의 20% 해당하는 금액
4. 사용일(check-in)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총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경우 환불에 필요한 송금수수료 등의 비용은 예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시설물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휴양림 사정으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 사용료를

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휴양림 사정으로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 사용료를 환불한다.

제8조(요금표의 게시) 자연휴양림 내에는 별표의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세입조치) 자연휴양림의 수입은 충청북도 일반회계세입으로 한다.

제10조(위탁관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산림법 제32조제1항, 동법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시 설 사 용 요 금 표

(단위 : 원)

구 분		기 준	1일 요금	비 고
숲속의 집	5평형	1동/4인	30,000	
	6평형	1동/5인	40,000	
	7평형	1동/5인	40,000	
다가구숲속의집	7평형	1실/5인	40,000	
	8평형	1실/6인	50,000	
단체숙소	25평형	1동/1일	120,000	
오토캠프장		승용차1대 및 텐트1조	5,000	
야영장	데크없음	7~8인용	3,000	
사계절썰매장	일반 청소년·군인 어린이		5,000	
			4,000	
			3,000	

관계법령 발췌

□ 산림법

[일부개정 2003.12.31 법률 제07058호]

第32條(休養林의 委託管理) ①第31條제3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養林造成計劃의 승인을 얻은 山林所有者는 休養林의 효율적인 造成 또는 管理·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休養林의 造成을 위한 工事 또는 그 관리·운영에 관한 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개정 94.12.22]

第33條(休養林의 入場料등) ①休養林의 管理·運營者는 休養林에 入場하는 者로부터 入場料 또는 施設使用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場料 또는 施設使用料의 徵收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改正1996.8.8>

[全文改正 1990.1.13]

□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 2004.1.20 법률 제07064호]

第12條 (消費者被害의 救濟)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의 不滿 및 被害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消費者와 事業者간의 紛爭의 원활한 解決을 위하여 大統領
令이 정하는 一般的 消費者被害補償基準에 따라 品目別로 消費者被害補
償基準을 制定할수 있다.

<改正 1995.12.29>

③第2項의 品目別 消費者被害補償基準은 紛爭當事者間에 補償方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消費者被害補償의 기준이 된다.

<新設 1995.12.29>